

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 일부개정 공고

「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0조(시행규칙 등) 규정에 의거하여 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을 일부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☐ 주요 개정 내용

- 제7조(위원의 신청·선정·위촉)
 - 공개모집 신청 서식 변경
 - 기존 위원 신청(추천)서 및 서약서 서식 삭제
 -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 증빙을 위한 자격 조항 신설
- 제8조(추첨 운영위원회) 삭제

☐ 개정 유형 : 일부개정

☐ 시행 일 : 2026. 1. 1.

☐ 붙임 : 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

2025. 12. 15.

만수6동 주민자치회장

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7조(위원의 접수·선정·위촉) ① 위원 신청 또는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1. 위원 신청서 및 서약서(별지 제2호 서식) 2. 위원 추천서 및 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 ②위원의 선정·위촉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. ③ 모집인원보다 접수자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. <u><신 설></u>	제7조(위원의 신청·선정·위촉) ①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,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② ----- 조례 제7조의2, -----. <u><삭 제></u> ④ 조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(사본)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8조(추첨 운영위원회) ① 위원 모집에 따른 공개추첨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8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둔다. ② 추첨 운영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첨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공개추첨이 종료되면 추첨 운영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 ③ 추첨방식 및 절차는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	제8조(추첨 운영위원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부칙(개정 2025. 12. 12.) 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2026. 1. 1. 부터 시행한다.